

2204-3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2005. 12. 26 제정	2006. 06. 27 개정
2006. 12. 28 개정	2007. 10. 08 개정
2008. 05. 22 개정	2009. 06. 10 개정
2012. 06. 25 개정	2012. 12. 14 개정
2014. 11. 28 개정	2015. 11. 27 개정
2016. 11. 30 개정	2017. 11. 29 개정
2018. 11. 27 개정	2019. 11. 20 개정
2020. 12. 15 개정	2021. 12. 07 개정
2022. 10. 31 개정	2023. 08. 30 개정
2024. 08. 27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LP가스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투자를 유도하고 자율안전관리 정착·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인증위원회에서 우수판매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위원회라 함은 인증심사 등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공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3. “우수판매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주관하는 본사 담당부서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기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공사의 업무)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신청 사업체에 대한 예비심사 및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
2. 인증제도 활성화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 개선에 관한 업무 등

제4조의2(심사원 역할 등)

- ① 공사는 우수판매인증사업체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본사 담당부서 및 광역본부·본부·지사(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심사원을 1명 이상 지정한다. <개정 2022.10.31>
- ② 심사원의 업무는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감독으로 한다.
- ③ 심사원은 객관적인 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사 담당부서가 실시하는 인증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지역은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심사원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본사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5조(인증신청 자격)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0.31>

1. 최초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한 LP가스판매사업자 (단, 제14조제 3호에 따라 인증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2.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한 적이 없는 LP가스판매사업자

제6조(인증신청)

-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첨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운영기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2. LP가스판매사업자 허가증 사본
 3.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인 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사업자만 제출) <개정 2023.8.30.>
 4. 가스보험증권 사본
 5.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별첨3-1)
 6. 건축물 등기부 등본
 7. 가스운반전용차량 등록증 사본 및 주차장 확인 서류
 8. 종업원 고용관련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등). 다만,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용기운반이 가능한 자격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② 제1항에 의한 인증신청 절차는 별첨5에 따른다.

제7조(예비심사)

- ① 공사 사장은 제6조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예비심사는 제9조에 의하여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점수 70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본심사에 상정한다.
- ③ 제2항의 현장실사는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LP가스소비자시설 10개소에 대한 확인점검을 별첨6의 서식에 의하여 병행 실시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예비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소비자시설 현장확인 점검은 인증교육을 받은 심사원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8.30.>
- ⑤ 제2항의 예비심사 처리기간은 인증신청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제8조(본 심사)

- ① 공사 사장은 예비심사 종료 후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상정한다.
- ② 인증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
· 평가하여 인증사업체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제9조(심사기준)

- ①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LP가스판매사업 기본요건 분야
 2. LP가스판매사업 운영시스템 분야
 3. 공급자의무이행실태 분야 등
- ② 제1항에 의한 세부심사 기준은 별첨4에 따른다.

제10조(인증서의 교부) 공사 사장은 제8조에 의하여 인증사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첨1의 인증서를 교부한다.

제11조(인증기간)

- ①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② 공사 사장은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에 인증기간의 만료사실을 인증사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인증사업체는 인증기간 만료 60일(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재심사 신청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 이전에 별첨3의 서식에 의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인증마크 등)

- ① 제8조에 의하여 선정된 인증사업체는 별첨2의 인증마크를 사업장 및 가스전용운반차량에 부착하는 등 인증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인증마크는 공사에서 제작지원 할 수 있다.
- ③ 인증마크는 제1조의 지침에 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인증혜택 등) 공사 사장은 제8조에 의하여 인증한 우수판매사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부여
2. 정기검사·안전관리종합평가·안전관리규정확인평가 면제
3.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증사업체 홍보
4. 각종 정부사업 참여 및 정부포상 등 우선 추천
5. 인증사업체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6. 가스유통구조개선사업 지원 한도 확대(5천만원→1억원)

제14조(인증서 재교부 등) 인증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첨 7의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 사장은 변경 내용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교부한다.

1. 상호 변경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사업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제17조에 따라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대표자 변경
 - 가. 액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한 경우
 - 나. 제17조에 따른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5조(인증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운영한다.
 1. 위원장 : 공사 안전관리이사

2.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개정 2022.10.31>

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담당 공무원

나. 가스전문 언론 2개사 임원

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임원

라. 공사 처·실장 3인 이내

- ② 위원장은 인증심사 업무를 총괄하며 인증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는 인증사업체 선정시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공사소속 외 위원 2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인증위원회 개최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적시한 서면을 통해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서면심의는 2회 연속하여 개최할 수 없다.)
- ⑥ 위원이 긴급사유 등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내 업무 관련자가 대리참석 할 수 있다.
-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첨 8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
- ⑧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증사업체 선정
 - 2.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방침 결정
 -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⑨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아니할 수 있다.
- ⑩ 위원장은 위원이 안전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요약·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확인(서명)을 포함하여 보관한다.
- ⑪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회 종료 후 14일 이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다만, 사업자 영업 비밀사항 노출 및 이미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하고 사유를 기재한다.

제15조의 2(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심사·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인증위원회에 상정된 사업자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2. 인증위원회에 상정된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② 인증위원회 위원 및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인증심사·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을 인증심사에서 제외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인증심사·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철, 기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위원을 인증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인증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관리감독)

- ① 공사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인증사업체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1.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과태료(1회)를 받은 경우
 2. 소비자불만신고 등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4. 시설변경, 주소지변경, 대표자변경 등으로 경영여건이 변동된 경우
 5. 기타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공사 사장은 제1항의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제19조의 시정요구 및 제20조에 의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지역은 관할 인증사업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 대상 여부와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사고 유발 여부를 허가관청의 공문을 통해 반기 1회 확인하여 본사 담당부서로 통보한다. <개정 2023.8.30.>
- ④ 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 등을 통보받은 본사 담당부서는 해당내용을 확인하여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정요구 및 인증취소 등의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⑤ 운영기관장은 필요할 경우 인증사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수시점검할 수 있다.

- ⑥ 지역은 관리감독 후 인증사업체가 제14조에 따른 인증서 재교부 대상 인지 확인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2.10.31>

제18조(인증사업체의 의무)

- ① 인증사업체는 제12조제1항의 인증서 및 인증마크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31>
- ② 인증사업체는 별첨 3-1 서식에 따른 안전관리운영시스템 현황을 연1회(당해연도 12월말까지)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1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시설변경, 주소지변경 등의 경영여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 ③ 인증사업체는 인증기간 중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의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운영 계획에 따라 액법 제37조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시정요구)

- ① 공사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표시한 경우
 2. 제17조의 관리감독 결과 세부심사 항목의 운영상태가 미흡한 경우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② 제1항에 의거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공사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사 사장은 제2항의 시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인증취소)

- ① 공사 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 시정요구를 받고 기일 내에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항이 판명된 경우
 3. 허가취소 또는 폐업된 경우
 4. 6개월 이상 장기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판매 사업을 지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5. 인증기간 내에 공급자 과실로 LP가스사고를 유발한 경우
 6. 액법과 관련, 인증기간 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받은 경우 또는 과징금 1회 이상
- 나. 벌칙 1회 이상
- 다. 과태료 2회 이상

7. 인증사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단, 제14조제3호에 따른 대표자 변경인 경우는 제외)

- ② 제1항에 의거 인증취소를 받은 자는 인증취소 받은 날부터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공사 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공사 사장은 제1항의 인증취소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공사 사장은 인증사업체 현황 및 관리감독 결과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기타) 이 지침 외에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시범·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 시범운영기간 중에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06년 2월 28일까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6.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8.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0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신청 주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인증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11호에도 불구하고 그 인증 유효기간을 6개월씩 연장한다.

1. 인증 유효기간이 2010년 6월1일 부터 2013년 5월31일인 인증업체
2. 인증 유효기간이 2011년 6월1일 부터 2014년 5월31일인 인증업체
3. 인증 유효기간이 2012년 6월1일 부터 2015년 5월31일인 인증업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1.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11.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 11.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 11.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 12.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 12.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 12.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0.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3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8.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 증 서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서

위 사업체는 LP가스 안전관리운영시스템이
우수판매사업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별첨 2]

인증마크(도안)



[원형 스티커]

[재질 : 버스홍보용 스티커, 규격 : 240mm]



[현 판]

[재질 : 스테인레스, 규격 : 420×380mm]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00가스 000-0000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각형 스티커]

[재질 : 버스홍보용 스티커, 규격 : 1000×150mm, 1200×180mm, 1500×230mm]

[별첨 3]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신청서			
① 업 체 명		③ 사업자등록 번 호	
② 대 표 자	한글 한자		
④ 소 재 지	(우 -)		
	전 화	☎() - 팩스	
		H·P :	
	E-mail		
⑤ 신청구분	☐ 신 규 ☐ 재심사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 국가스안전공사 귀하			
※ 구비서류 1.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주력분야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인 건설업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자만 제출) 1부 3. 가스보험증권 사본 1부 4.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5.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6. 가스운반자동차 등록증사본 및 주차장확인 서류 7. 종업원 고용관련 확인서류(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등) - 용기 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서류 제출			

LP가스판매사업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현황

□ 판매사업 기본요건

구 분		현 황	비 고
1. 판매물량	용 기	(톤/월)	○ 월 평균 판매물량 - 거래상항기록부 보고 물량 및 보험가입시 판매물량 참조
	벌크로리	(톤/월)	
2. 용기보관실 면적 (허가관청 인정기준이상 또는 판매물량과 연동)		m ²	○ 19m ² 이상 확보 ○ 19m ² 미만(판매물량 연동 및 최소12m ² 이상)
3. 사무실 면적		m ²	○ 9m ² 이상 ○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 이상
4. 운반자동차 보유대수	용기전용운반차량	대	○ 사업자명의로 확보
	벌크로리	대	
5. 주차장 면적	용기전용운반차량	m ²	○ 법적기준 이상 확보 - '06.5.3이전 허가 : 10 m ² 이상 - '06.5.3이후 허가 : 11.5m ² 이상
	벌크로리	m ²	
6. 사업소 본인 소유여부		자가, 임대 년	○ 사업자 본인소유 또는 임대 <u>1년</u> 이상 인정
7.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1종 또는 2종 등록 여부		1종, 2종, 미등록	○ 2종 이상 등록 인정 (대표자, 공동대표, 배우자명의 인정)
8. 안전관리자 고용인원 수	안전관리책임자	명	○ 사업소 실제근무자 ○ 자격 및 교육이수 사항 확인 ○ 선임신고 사실 증빙 - 안전관리책임자 : 행정관청 신고자료 - 안전관리원 : 자체선임 자료
	안전 관리원	명	
9.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인원		명	○ 1명(벌크사업자인 경우 2명) 이상 - 배달원 특별교육 등 자격을 갖추고 용기 운반 등 실제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 ○ 고용관련 서류 제출 (건강보험증, 급여명세표 등) - 용기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판매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배달원 특별교육 이상의 자격서류 제출
10. 최근 3년간 공급자과실로 인한 LP가스사고 여부 (신청기준일)		유, 무	○ 사고발생 여부
11.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여부 (신청기준일)		유, 무	○ 행정처분 여부
12. 보험가입여부 (가스사고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 보험가입여부
13.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유, 무	○ 전체 공급시설 관리를 위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 판매사업운영 및 공급자의무사항

구 분		현 황		비 고
		용 기	벌크로리 (소형저장탱크)	
1. 총 공급 세대수	총 업소 수	개소 (용기가스소비자 수※ : 개소)	개소	○ 전체 공급세대 수
2.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3. 공급계약 체결 수 - 용기가스소비자인 경우, “안전공급계약” 체결 수		· 공 급 계 약 체 결 : 개소	· 공 급 계 약 체 결 : 개소	○ 공급계약체결 소비자 수
4. 공급계약체결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체결 소비자 수
5.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		개소	개소	○ 공급업소대비 안전점검 수
6. 소비설비 안점점검 현황 전산관리 수		개소	개소	○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7. 가스보일러공급 세대수 // 전산관리 수		(가스보일러 공급 세대수) 개소 // (가스보일러 전산관리 수) 개소		○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 수
8. 안전공급 계약 체결 확인증 부착 및 계도물 제작·배포 여부	① 공급계약 체결 스티커	· 부착업소 수 : 매	· 부착업소 수※ : 매	○ 공급업소대비 부착율 및 배포율 ※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자체제작 스티커 인정
	② 계도물	· 배 포 업 소 : 매	· 배포업소 수 : 매	
9. 가스안전보안관활동, 표창수상 여부 (가점항목)		① 사회공헌 : □가스안전보안관 활동 ② 표창수상 : □장관 이상, □지자체, □사장 □기 타		○ 증빙서류 제출 [가스관련 최근 3년간만 인정]
10. 지자체 및 공사 주관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최근 1년간)		① 지자체 : ()회 참석 ② 공 사 : ()회 참석		○ 가스 관련 간담회 및 캠페인 참여횟수
11. 가스시설 금속 배관화율		% (※ 호스 사용시설 수 : 개소)		○ 공급업소대비 금속 배관화율
12.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여부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 업소 : 개소		○ 매월 행정관청 제출 증빙서류 제출
13. 체적 거래율	① 체적 대상	개소	개소	○ 체적공급대상 대비 체적공급 수
	② 체적공급수	개소	개소	

※ 용기가스소비자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단, 자동차연료용,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이동식부탄연소기용, 공업용, 선박용,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자 제외)

인증심사 세부기준

□ 기본요건 분야

심사항목	심사기준
① 용기보관실 면적 (허가관청 인정기준 이상 또는 판매물량 연동)	○ 용기보관실 면적 19㎡이상 및 허가관청 인정기준 이상 확보 ○ 용기보관실 면적 19㎡미만일 경우 판매물량 연동에 따른 면적이상 확보 (단, 판매물량 연동 시 '96. 3. 11이전에 허가를 받은 판매업소의 용기 보관실 면적은 최소 12㎡이상 이어야함) • 판매물량에 따른 용기보관실 면적 산출식 $S = \{0.4805 \times C\} \times \{1 - (V/2)\}$ [S : 용기보관실 면적(㎡), C : 월 판매량(톤), V : 체적공급비율(%)/100(체적공급비율(V)이 60%미만인 경우 0으로 적용)] ※ 판매량은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물량을 적용 한다. (최근 1년간)
② 사무실 면적	○ 9㎡이상 확보 ○ 지자체 고시에서 정한 면적이상 확보
③ 가스전용운반자동차 (사업자명의로 확보)	○ 판매사업 허가증에 표기된 대표자 명의로 가스전용운반자동차 (벌크로리 포함) 확보 • 자동차 등록증과 판매사업 허가증의 대표자 비교 ㉠ “용기전용운반자동차” 판매물량과 연동 보유(용기 판매물량 기준) • 체적거래비율80%이상 : 50톤이하-1대, 50톤초과-2대 • 체적거래비율80%미만 : 20톤이하 -1대, 50톤이하-2대, 50톤초과-3대 ㉡ “벌크로리” 1대 이상 확보 (용기+벌크로리 허가인 경우에 한함)
④ 주차장면적 (10㎡, 11.5㎡이상)	○ 가스전용운반차량 주차면적 법적기준이상 확보 • 법적기준 : '06. 5. 3이전 허가업소 → 10㎡이상 '06. 5. 3이후 허가업소 → 11.5㎡이상
⑤ 사업소 소유여부 (사업소 본인소유)	○ 사업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사업자 본인소유 또는 임대기간 1년 이상 • 임대기간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1년 이상 임대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포함 ※ 배우자 명의인 경우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⑥ 경계표지 (용기보관실 및 가스전용운반 자동차에 경계표지부착)	○ 용기보관실 : 경계표지(화기엄금, LPG저장소 등) ○ 가스전용운반자동차 : 삼각기 부착, 경계표지(차량 앞·뒤)
⑦ 긴급조치 장비 비치	○ 자기압력기록계, 검지기 등 긴급조치 장비 보유

심 사 항 목	심 사 기 준
⑧ 안전관리책임자 상주근무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안전관리책임자의 사업소 상주 근무 ○ 비상연락망체계 제시
⑨ 적정인원의 종업원 고용	○ 용기 판매 (용기 판매물량 기준) • 체적거래 비율이 80%이상 : 50톤이하-1명, 50톤초과-2명 • 체적거래 비율이 80%미만 : 20톤이하-1명, 50톤이하-2명, 50톤초과-3명 ○ 용기+벌크로리 판매 • 용기 판매에 따른 종업원 수 + 벌크로리 운반자 1명 이상 ○ 용기 운반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실제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자를 위에 따른 종업원 고용 수에 포함할 수 있다. ○ 종업원 적정 고용 여부 확인 시, 실제 운반·판매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만 인정(전담 사무직 제외) • 운반자동차 운전자·배달원 특별교육 이상 이수자
⑩ 최근 3년간 공급자과실로 인한 LP가스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업소	○ 공급자 과실로 인한 LP가스사고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함
⑪ 행정처분	○ 신규인증 대상은 최근 1년 간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 처분 실적이 없어야 함 ○ 재심사 대상은 본 지침 제20조제1항제6호(인증취소)에 따름
⑫ 보험가입 여부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과 소비자보장책임보험 모두 가입해야 함
⑬ 정기검사(자율검사 포함) 합격	○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체는 최근 1년간 정기검사(자율검사) 결과 모두 합격을 받아야 함 ○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시설·기술 기준에 적합해야 함
⑭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체는 최근 1년간 안전관리규정확인 결과가 모두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 재심사를 신청하는 사업체는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에 준하여 평가를 받고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함 ※ 단, 인증심사 세부기준과 동일한 평가항목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⑮ 전년도 1년간 안전관리 종합평가 700점 이상	○ 안전관리종합평가결과 700점 이상을 받아야 함 • “용기+벌크로리”판매사업자로서 용기가스소비자 공급이 없는 (안전관리종합평가 비대상) 경우, 판정 제외
⑯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여부	○ 전체 공급업소 관리, 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 내역 관리, 공급계약 현황 관리 등이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활용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함.(단순 파일관리는 제외)

□ 판매사업운영 분야

심 사 항 목	심 사 기 준		총 배점 (400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배점		
1. 소비자현황 전산관리	○ 전산관리 <u>95%이상</u>	<u>75점</u>	<u>75점</u>	* 전산입력 수/ 총 공급업소 수
	○ 전산관리 <u>85%이상</u>	<u>60점</u>		
	○ 전산관리 <u>75%이상</u>	<u>45점</u>		
	○ 전산관리 <u>65%이상</u>	<u>30점</u>		
	○ 전산관리 <u>65%미만</u>	<u>15점</u>		
2. (안전)공급계약 체결율	○ 체결율 100%	50점	50점	* 계약체결업소 수 / 총 공급업소 수 ※ 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소 포함
	○ 체결율 90%이상	40점		
	○ 체결율 80%이상	30점		
	○ 체결율 70%이상	20점		
	○ 체결율 70%미만	0점		
3. 용기상호표시율	○ 표시율 100%	50점	50점	* 상호표시용기 수/ 총 확인용기 수 * 현장확인 * 소형저장탱크 시설인 경우, 경계표지(LPG저장소, 화기 엄금 용무외출입금지) 및 긴급연락처(공급자명칭, 주소, 전화번호) 표시 확인
	○ 표시율 90%이상	40점		
	○ 표시율 80%이상	30점		
	○ 표시율 70%이상	20점		
	○ 표시율 70%미만	0점		
4. 가스보일러 설치현황 관리	○ 전산관리 95%이상	25점	25점	* 설치현황 전산관리 업소 수/총 보일러설치 업소 수 (보일러 공급이 없을 경우 제외점수 적용)
	○ 전산관리 85%이상	<u>20점</u>		
	○ 전산관리 75%이상	<u>15점</u>		
	○ 전산관리 <u>65%이상</u>	<u>10점</u>		
	○ <u>전산관리 65%미만</u>	<u>5점</u>		
5. (안전)공급계약서 현황관리	○ 전산관리 <u>95%이상</u>	<u>50점</u>	<u>50점</u>	* 총 계약현황관리 업소 수/ 총 공급업소 수 ※ 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소 포함
	○ 전산관리 <u>85%이상</u>	<u>40점</u>		
	○ 전산관리 <u>75%이상</u>	<u>30점</u>		
	○ 전산관리 <u>65%이상</u>	<u>20점</u>		
	○ 전산관리 <u>65%미만</u>	<u>10점</u>		

심 사 항 목	심 사 기 준		총 배점 (400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배점		
6. 소비설비안전점검 현황관리	○ 전산관리 <u>95%이상</u>	<u>75점</u>	<u>75점</u>	* 전산관리 업소 수/ 안전점검 수 ※ 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소 포함
	○ 전산관리 <u>85%이상</u>	<u>60점</u>		
	○ 전산관리 <u>75%이상</u>	<u>45점</u>		
	○ 전산관리 <u>65%이상</u>	<u>30점</u>		
	○ 전산관리 <u>65%미만</u>	<u>15점</u>		
7. 안전공급계약체결 확인증 부착 여부	○ 체결 인증	100% 부착	50점	* 수요자시설 현장확인 (10개소) ※ 소형저장탱크 시설의 경우, 공급자 자체제작 스티커 부착시 인정
		90%이상 부착		
		80%이상 부착		
		70%이상 부착		
		70%미만 부착		
8. 판매사업소의 보관실도색, 보관실 정리정돈	○ 보관실 도색	10점	20점	* 현장확인 (미흡 할 경우 각 항목 0점처리)
	○ 보관실 정리정돈	10점		
9. 지자체, 공사 주관 간담회 및 캠페인 등 참여 여부	○ 1회/년 이상	5점	5점	* 관련서류 확인 (최근 1년간 간담회 등 참석 여부) ※ 지자체 및 공사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 사업 참여 시 인정
	○ 1년 내 미참여	0점		
10. 가스안전 보안관 활동, 표창수상	○ 가스안전보안관 활동	10점	30점 (가점)	* 관련서류 확인 (표창수상은 가스관련 분야의 최근 3년간만 해당)
	○ 표창수상 (장관·사장이상)	10점		
	○ 표창수상(자치단체)	10점		
11. 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 등록 여부	○ 등록	10점	10점 (가점)	* 관련서류 확인
12. 종업원 추가고용 여부	○ 추가고용 있음	10점	10점 (가점)	* 가스전용운반자동차 수량 대비 종업원 고용 인원 비교 ※ 종업원수-운반자동차수 (벌크로리 포함) = 추가 고용 인원수
13. 모바일 시스템 활용 여부	○ 모바일 시스템 활용	10점	10점 (가점)	*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시스템 사용 확인 (단순 모바일 관리가 아닌 전용 앱 등 사용 시 인정)

※ 주력분야를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등록(대표자 명의, 공동대표, 배우자명의)
단, 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시·군·구에 주력분야를 가스시설공사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등록한 자
중 **공동화^주** 등으로 시공업이 분리되어 당해 사업자의 지분 소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 주) : “공동화”란 여러개의 판매업소가 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 공급자의무준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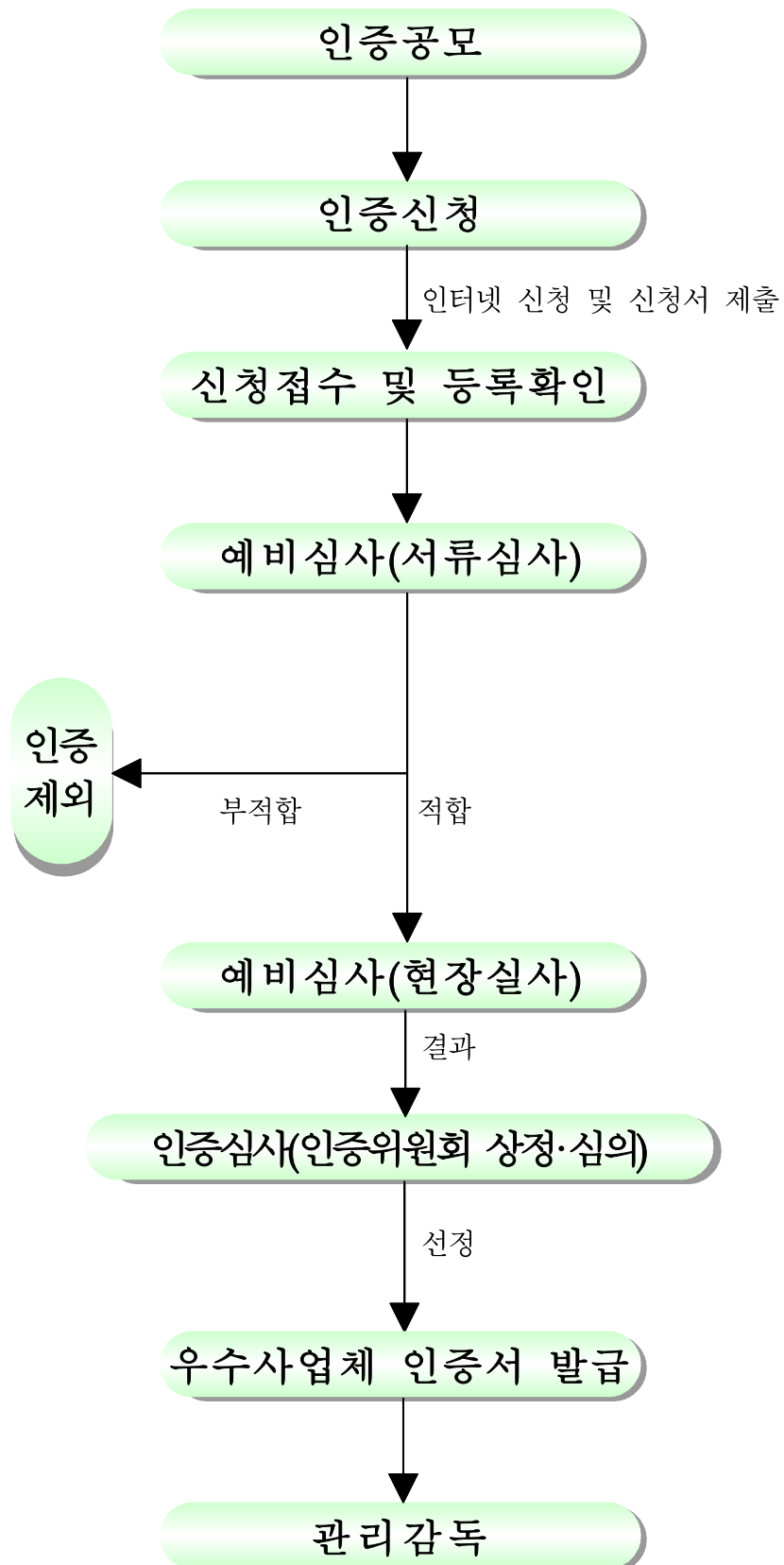
심사 항목	심사기준		총 배점 (600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배점		
1. 체적거래 비율	○ 체적거래 비율 100%	100점	100점	* 체적거래 업소 수 / 체적공급대상 업소 수
	○ 체적거래 비율 90%이상	80점		
	○ 체적거래 비율 80%이상	60점		
	○ 체적거래 비율 70%이상	40점		
	○ 체적거래 비율 70%미만	0점		
2. 공급시설 금속배관화율	○ 금속배관화율 100%	50점	50점	* 배관설치 시설 수 / 총 현장확인 수 * <u>수요자시설 현장확인 (10개소)</u>
	○ 금속배관화율 90%이상	40점		
	○ 금속배관화율 80%이상	30점		
	○ 금속배관화율 70%이상	20점		
	○ 금속배관화율 70%미만	0점		
3. 소비설비 안전점검 실시율	○ 안전점검 실시율 100%	<u>150점</u>	<u>150점</u>	* 안전점검 실시업소 수 / 총 공급업소 수
	○ 안전점검 실시율 90%이상	<u>120점</u>		
	○ 안전점검 실시율 80%이상	<u>90점</u>		
	○ 안전점검 실시율 70%이상	<u>60점</u>		
	○ 안전점검 실시율 70%미만	<u>0점</u>		
4. 최근 1년간 미 검사시설 가스공급여부	○ 공급없음	100점	100점	* 심사기준일 대비 (공사전산자료 확인)
	○ 1개소 공급	80점		
	○ 2개소 공급	60점		
	○ 3개소 공급	40점		
	○ 4개소 이상공급	0점		
5. 최근 1년간 부적합시설 가스공급여부	○ 공급없음	100점	100점	* 심사기준일 대비 (공사전산자료 확인) * <u>수요자시설 현장확인 (10개소)</u>
	○ 1개소 공급	80점		
	○ 2개소 공급	60점		
	○ 3개소 공급	40점		
	○ 4개소 이상공급	0점		
6. 소비설비 안전점검 총괄표 제출율	○ 점검 총괄표 제출율 100%	50점	50점	* 월별 제출서류 확 인(필요시 행정관 청 확인)
	○ 점검 총괄표 제출율 90%이상	40점		
	○ 점검 총괄표 제출율 80%이상	30점		
	○ 점검 총괄표 제출율 70%이상	20점		
	○ 점검 총괄표 제출율 70%미만	0점		
7. 안전계도물 제작·배포 여부	○ <u>100% 배포</u>	<u>50점</u>	<u>50점</u>	* <u>수요자시설 현장확인 (10개소)</u> * <u>문자, 메신저 등 온라인을 활용한 계도물 배포 인정</u>
	○ <u>90%이상 배포</u>	<u>40점</u>		
	○ <u>80%이상 배포</u>	<u>30점</u>		
	○ <u>70%이상 배포</u>	<u>20점</u>		
	○ <u>70%미만 배포</u>	<u>0점</u>		

주) 1. 실제배점 = 총 배점(1000점) - 제외점수

2. 최종심사점수 = [(총 평가점수 ÷ 실제배점) × 1000] + 가점

※ 단, 평가점수는 10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인증절차 흐름도



[별첨 7]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① 업 체 명		③ 사업자등록 번 호	
② 대 표 자	한글 한자		
④ 소 재 지	(우 -)		
	전 화	☎() - 팩스	
		H·P :	
	E-mail		
⑤ 재 교 부 사 유	☐ 인증서 분실 ☐ 상호 변경 ☐ 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기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에 관한 지침」 제14조에 따라 인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귀 하

※ 구비서류

1. LP가스판매사업 허가증(변경 내역이 기재된 허가증) 사본 1부

청 럽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직 위 :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위원(장)
성 명 :

- 상기 본인은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한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 약 자 : (서명)